



LEGAL UPDATE

ESG센터

Dec. 202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 6대 품목 등 영향 기업은 내년 10월 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부터 점진적 대응 필요 -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로 기존 입법 초안보다 확대되었으며, 2026년(EU ETS 무상할당 폐지 계획에 따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 EU CBAM 추진 동향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ETS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EEA 국가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입니다. CBAM은 유럽연합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핏포55(Fit for 55,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탄소가격 대비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 차이만큼을 관세 형태로 물리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Fit for 55 패키지를 2021년 7월 제안하였으며, 이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6월 22일(현지시간) EU의회 본회의에서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되었고, 2022년 12월 12일 EU 는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합의](#)하였습니다.

※참고: CBAM 의 개념 및 기존 동향 관련 세부 내용은 이전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국경세 시대의 도래](#)

2. 합의안 개요

(1) 적용 대상

[EU 의회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가장 탄소 집약적 섹터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6개)와 특정 조건에서의 간접배출 및 다운스트림 제품 등 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EU의회는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초안보다 CBAM 부과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안에서 빠졌던 수소가 협의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도 포함되었는데, 집행위는 CBAM 시범 운영 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 및 유기화합물질, 플라스틱 등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기간 이후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 전체로](#) CBAM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EU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나 품목은 전력과 열 생산, 정유, 철강,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유리, 석회, 펄프, 제지, 판지, 유기화학, 유럽 내 항공 운항, 아디프산과 글리옥실산, 글리옥살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입니다.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관련, 유럽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직접배출(Scope1)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Scope2)도 CBAM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간접배출은 '특정 조건'에 한하여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운영 시기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서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즉 시범적용 기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이 부과되는 체제가 도입됩니다. 이번 합의 결과 우선 적용 대상이 된 6개 품목의 경우 전환기간 중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보고 해야 합니다. 전환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EU내 이산화탄소의 가격에 맞춰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제품의 내재 배출량이 유럽 평균을 넘는 경우 탄소 관세 성격의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3) EU ETS개편안

[EU의 CBAM은 기본적으로 현재 EU가 추진중인 탄소시장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EU는 ETS 시스템 상에 무상할당의 형식으로 기업들에게 허용해오던 탄소배출권을 점차 유상할당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렇게 되면, 탄소 원가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기후 정책이 약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EU는 CBAM을 통해 유럽 역내 기업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CBAM이 도입될 경우 무상 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8일\(현지시간\) EU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와 2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탄생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혁안에는 △ETS 적용 분야의 감축 목표 상향 △무료 할당제 폐지 △도로 운송 및 건물용 연료에 대한 별도 금액 부과 등을 포함했습니다.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에는 9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2026년에는 2700만 톤의 EU 전역 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허용량을 2024~2027년에는 4.3%, 2028~2030년에는 4.4%로 줄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무료할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 2026년 2.5%를 시작으로 2034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앞서 합의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무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와 동일한 속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U의회는](#) "EU 자국 산업의 이중 보호 조치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면 적용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와 연계해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고 이 제도가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국내 영향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시범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43억달러, 5조 6000억원)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등입니다. 특히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CBAM의 직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3일 오후,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경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對)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